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459

발의연월일: 2025. 5. 9.

발 의 자: 강대식 · 박덕흠 · 구자근

박준태 · 강선영 · 김선교

고동진 • 조배숙 • 이인선

임종득 • 이달희 • 조지연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건전한 게임 문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게임 문화 체험 시설 또는 상담·교육 시설 등 공공 목적의 게임 문화 시설 설치 및 운영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미국은 2006년 '미국 국립 게임 박물관'을 개관하여 게임의 역사와 문화를 국가 차원에서 보존하고 있으며, 독일은 1997년부터 '컴퓨터 슈필레 박물관'을 운영하여 게임의 유익한 가치를 널리 알리고 있음. 반면,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온라인 게임 및 이스포츠 강국이고 게임 산업은 국가 경제와 문화 콘텐츠 수출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게임의 역사와 발전과정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전시하는 국 가 차원의 게임 문화 시설은 전무한 실정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의 역사와 산업 발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게임의 사회·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국

립게임박물관을 설립 및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신설).

법률 제 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국립게임박물관의 설립·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의 역사와 산업 발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게임의 사회·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국립게임박물관을 설립·운영할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립게임박물관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 <신 설></u>	제15조(국립게임박물관의 설립ㆍ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은 게임의 역사와 산업 발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게임의 사회・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국립게임
	박물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
	<u>다.</u>
	② 제1항에 따른 국립게임박물
	관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